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에 등록된 저가 상품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10% 부과 (2024년 1월 1일 시행)



기타(식품)

이슈 바로가기

-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MCD)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500 말레이시아 링깃(한화약 14만 원) 이하의 저가상품(Low Value Goods, LVG)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 내용(판매세 부과 기준 및 판매자 등록 의무)
 - 1) 대상 품목: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제품으로, 판매 가격이 500 말레이시아 링깃(MYR) 이하인 모든 제품*
 - (*) 담배류 제외
 - 2) 판매세율: 제품 판매 가격의 10% (※세금, 관세, 운송비, 보험비 등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
 - 3) 판매세 부과 대상: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등록된 저가상품 판매자
 - 4) 말레이시아 관세청 판매자 등록 의무
 -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한 모든 저가상품의 연간(12개월 기준) 판매액이 5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약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온라인 판매자는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 판매자 등록 필요
 - 12개월 기준 저가상품 총판매액이 기준점을 초과한 달(month)의 마지막 날부터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등록 필요(ex. 2024년 2월 3일에 판매액 기준점 초과 → 2024년 2월 28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 등록된 판매자에게는 저가상품 등록 번호 부여
 - 5) 저가상품(LVG) 수입 시 적용 요건
 - 운송장 등 저가상품 등록 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상품 포장에 저가상품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수입업체 또는 통관 대행업체는 수입 신고 시 저가상품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함
 - 6) 위반 시 조치사항: 판매세 미납 시 미납 기간에 따라 미납된 판매세액의 10%에서 최대 40%가 벌금으로 부과됨
 - 7)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처: KPMG, Sales Tax on Low Value Goods ("LVG") - Starting 1 January 2024

일본, 한국산 실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조치 해제

- 2023년 11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국산 목이버섯과 한국산 실파, 인도산 대두에 대하여 「2023년 수입 식품 감시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지금까지의 검사 실적에 근거하여 한국산 실파에 대해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 모니터링 계획을 삭제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1) 배경
 - 일본은 매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 (*) 대상은 약생식수발(藥生食輸菜) 0330 제1호의 별표를 통해 통지됨
 - (**) 대상은 약생식수발(藥生食輸菜) 0330 제2호의 별표를 통해 통지됨
 -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향후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 일본은 2022년 11월 24일자 통지를 통해, 한국산 실파의 잔류농약 기준 위반 사례로 인한 한국산 실파의 에토펜프록스 모니터링 검사 빈도를 30%로 인상한 바 있음
 - 이번 고시를 통해 한국산 실파의 에토펜프록스 모니터링 강화가 해제되었음
 - 2) 통지내용(한국 관련 내용만)



SPS

대상 품목	검사 항목	내용
한국산 실파	에토펜프록스 (일본 잔류허용기준: 40ppm 이하)	모니터링 강화대상에서 삭제 (기존 30% 검사 빈도에서 통상 5% 수준으로 축소 시행)

출처: 健康・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令和5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3.11.27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호주, 우유 함량 10% 미만의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공고(2023년 11월 9일 발효)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공지「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증빙 요건 업데이트」와 「FN 15-23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을 발표하고, 강화된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수입 요건이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우유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
 -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 미만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 방식 변경
 - 기존 증빙 요건: 상업 송장(invoice)을 통해 증빙 가능
 - 변경 요건: 제조업체 신고서(Manufacturer's declaration) 또는 식품 라벨을 통해 증거 표시 필요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
 -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제출 의무 적용
 - (*) 호주에서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 발행 요건으로, 발급을 위해서 수출국 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호주에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을 신청해야 함
 - 제품은 정부 인증서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
 -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 제외 대상
 - 조미료와 소스를 포함한 즉석식품 및 상온 보관 식품
 - 건조 제품(건조한 이매패류 연체동물이 함유된 차가운 수프 믹스 포함)
- 발효일: **2023년 11월 9일**

출처 : Chemlinked food, Australia Updates Import Requirements on Dairy and Aquatic Products, 2023. 11. 20

미국, 발효유 기준 개정 최종 규칙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준수)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준수되어야 하는 '우유 및 크림제품과 발효유제품: 저지방 발효유와 무지방 발효유의 기준을 삭제하고 발효유의 기준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을 발표함
- 주요 내용



TBT

이슈 바로가기

구분	내용
발효유 (Yogurt)의 정의 및 규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유는 하나 이상의 기본 유제품 성분과 선택적인 유제품 성분 중 하나 이상을 특정 박테리아 배양액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으로 정의됨 특정 박테리아 배양액을 첨가하기 전에 기본 유제품 성분과 선택적인 유제품 성분을 균질화 할 수 있으며 저온 살균 또는 초저온 살균해야 함 발효유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최소 3.25%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하며, 최소 8.25%의 무지방 우유 고형분을 함유해야 함 충전 후 24시간 이내에 완제품에서 측정된 pH가 4.6 이하여야 함
필수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유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유제품 성분(basic dairy ingredients) 중 하나 이상의 포함되어야 함 크림(Cream), 우유(Milk), 부분 탈지유(Partially skimmed milk), 탈지유(Skim milk)
사용 가능 박테리아 배양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젖산(lactic acid) 생성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 델브뤼키이 불가리쿠스(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Streptococcus thermophilus)를 사용하여 발효유를 생산해야 함 필수 박테리아 배양액 외에 다른 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적 성분(optional ingredients)'으로 간주됨
사용 가능 선택적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박테리아 이외의 박테리아 배양액 감미료, 향료, 색소 첨가제, 안정제, 유화제, 방부제, 비타민 A, 비타민 D
저지방 및 무지방 발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방 함량이 3.25% 미만이며, 최소 2.44%인 발효유도 생산 가능함(21 CFR 131.200) 유지방 함량이 2.44% 미만인 경우, 변형식품(modified food)으로 간주되며 저지방 발효유, 무지방 발효유는 이에 해당됨 "저지방감소(reduced fat)", "저지방(lowfat)", "무지방(nonfat, fat free)" 등의 영양 함량 표시를 하는 경우, 영양소 함량 표시 기준인 21 CFR 130.10 및 21 CFR 101.62(b)을 준수해야 함 저지방 발효유 생산으로 인한 영양 수준 감소 시 비타민 A를 제외하고 감소된 영양 성분을 강화해야 함 저지방(reduced, lowfat) 발효유, 무지방(nonfat, fat free) 발효유의 유지방 요구량은 차이가 있으며, 통상 섭취 기준량(RACC)인 170g을 기준으로 함(제품별 상세 기준은 21 CFR 101.62(b) 참고)

(*) 시행일: 제조업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라벨이 표시된 제품에 대해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 미국 FD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Milk and Cream Products and Yogurt Products, 2023.11.23